

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

- 내년 2월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
압류금지 금액을 상향하여 민생보호 강화 -

- 법무부는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.
(10. 28. ~ 12. 8.)
 - 개정안은 ▲내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(1인 1계좌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▲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→ 월 250만 원으로, 사망보험금 1,000만 원 → 1,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※ (생계비계좌)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, 전 국민은 2026. 2.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

【 개정안 주요 내용 】

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 신설

- ▶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
- ▶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▲국내은행(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, 인터넷전문은행), ▲저축은행, ▲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▲우체국으로 규정

②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 상향

유형		현행	개정
압류금지 생계비		185만 원	250만 원
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		월 185만 원	월 250만 원
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	사망보험금	1천만 원	1,500만 원
	만기·해약환급금 (일부)	150만 원	250만 원

1. 추진 배경

-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「민사집행법」이 2026. 2. 1. 시행될 예정입니다.
 - ※ 현재도 1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나,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,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 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임 (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,014건)
 - 이에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,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민사집행법」 개정됨
- 한편,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 당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85만 원(개정 전 150만 원)으로 상향되었는데, 그 후 물가,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.
- 이에 법무부는 수개월간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압류금지 생계비 등 압류금지 금액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의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2. 개정안 주요 내용

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 신설

-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,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*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* ▲국내은행(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, 인터넷전문은행), ▲저축은행, ▲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▲우체국

-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압류금지 생계비는 현행 압류금지 예금인 185만 원에서 **250만 원으로 상향**

- 다만, 반복적인 입·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
- 아울러,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(「민사집행법」 제195조제3호)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,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.

- ❖ 500만 원을 빚진 채무자의 예금이 A은행 200만 원, B은행 100만 원 뿐이라면?

개정 前	■ 채무자는 A, B은행의 출금 제한으로 <u>일단 전액 인출 불가</u> ※ 채권자는 A은행 예금 중 15만 원(200만 원-185만 원)은 추심 가능 ■ 이에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A은행 예금 중 185만 원의 인출 가능
개정 後 (생계비계좌는 A은행)	■ 생계비계좌 예금 200만 원은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 가능 ■ B은행 예금 중 50만 원까지 추가로 보호됨

②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 상향

-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*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
*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1/2의 압류가 금지되나,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소 압류금지 금액을 설정하고 있음

- 또한,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도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.

- (사망보험금) 현행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상향
- (▲ 만기환급금, ▲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·전부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)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

○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(개인별 잔액 250만 원)과의 불균형도 해소됩니다.

※ 2024년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상향

○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3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, 소상공인·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-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
- 앞으로도 법무부는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【붙임】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신·구 조문 대비표

담당 부서	법무부 법무실	책임자	법무심의관 조아라 (02-2110-3164)
	법무심의관실	담당자	검사 박준석 (02-2110-3507)



현행	개정안
제2조(압류금지 생계비) 「민사집행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5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”이란 <u>185만원</u> 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(적금·부금·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, 이하 “예금등”이라 한다)이 있으면 <u>185만원에서</u>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	제2조(압류금지 생계비) ----- ----- ----- <u>250만원</u> 을 ----- 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----- ----- ----- <u>250</u> <u>만원에서</u> ----- -----.
제3조(압류금지 최저금액)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”이란 월 <u>185만원</u> 을 말한다.	제3조(압류금지 최저금액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50만원</u> -----.
제6조(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)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,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.	제6조(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
의 보험금

2. (생략)

3.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
금

가. (생략)

나.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
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
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
하의 금액

4.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
150만원 이하의 금액

② (생략)

제7조(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)
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
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
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
인 예금등으로 한다. 다만, 법
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
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
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<신설>

1. ----- 1천5백만원 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---- 250만원 ---

4. -----
250만원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)
법 제246조제1항제9호-----

----- 250만원 ----

--- 금전이나 법 제246조의2에
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
이 있으면 250만원-----.

제8조(생계비계좌) ① 법 제246조
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
하는 금액”이란 250만원을 말한
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
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
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
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
입금된 금액이 제1항에서 정한
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
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
이미 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
에 예치된 금액으로 본다.

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”
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
다.

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한
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
산업은행 및 「중소기업은행
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2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
상호저축은행
3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
조합 및 농협은행, 「수산업협
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
수협은행, 「신용협동조합
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,
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
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
고

4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
④ 제3항의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 또는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생계비계좌의 개설·해지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의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제4항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고,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